

# 정 관



## 제 1 장 총 칙

**제 1 조 (명 칭)**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(KOREAN AMATEUR RADIO LEAGUE, 약칭 KARL, 이하 연맹)이라 칭한다.

**제 2 조 (목적)** 연맹은 정당한 아마추어무선통신과 실험을 장려 지도하고, 무선통신 분야의 기술 향상과 이의 보급 및 천재지변 등 긴급한 재해발생 시에 통신지원과 인명구조 및 구호활동을 하며 무선국을 통한 사회봉사와 회원 권익 및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 조 (소재지)** 연맹은 본부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84 (마평동)에 둔다.

**제 3 조 1 (지역본부)** ① 본 연맹은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별로 (이하 "지역본부구역") 지역본부를 둔다.  
② 지역본부의 조직운영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.

## 제 2 장 사 업

**제 4 조 (사 업)**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 한다.

1. 회지(KARL) 및 무선통신에 관한 출판물 간행
2. 교신증, 수신증의 중계 전송
3. 무선통신에 관한 실습회, 경연회, 강습회, 견학회, 연구발표회 개최 및 상장(AWARD) 발행
4. 국제아마추어무선연합(THE INTERNATIONAL AMATEUR RADIO UNION, IARU) 및 제외국 아마추어 무선 단체와의 제휴
5.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
6. 기타 연맹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

## 제 3 장 회 원

**제 5 조 (회 원)** 연맹 회원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.

1. 정 회 원 : 아마추어국 호출부호를 지정받거나 받은 적이 있고, 소정의 입회 수속을 마친 개인 또는 단체.
2. 준 회 원 : 아마추어무선에 취미를 가지고 소정의 입회 수속을 마친 자.
3. 특별회원 : 연맹의 취지에 찬동하고 연맹의 사업에 협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사회의 저명인사 및 아마추어무선 발전에 공헌이 지대 한자로서 이사회의 추천 후 의결을 거친 자.

**제 6 조 (회비부담)** 회원은 연맹의 발전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

**제 7 조 (상 별)** ① 연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및 우수 아마추어국 운용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.

② 연맹의 정관 및 제규정과 관계 전파법규를 위반하여 연맹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후 징계한다.

## 제 4 장

### 명예이사장, 고문 및 자문위원

**제 8 조 (명예이사장)** ① 연맹에는 명예이사장을 둘 수 있다.

② 명예이사장은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중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하며, 그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와 같다.

**제 9 조 (고문, 자문위원 및 명예이사)** ① 연맹에는 고문, 자문위원 및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.

② 고문은 전직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 외의 고문 및 자문위원, 명예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다. 고문, 자문위원은 연맹의 자문 요청에 응하며, 명예이사는 연맹에서 추구하는 사업에 동참한다.

## 제 5 장 임 원

**제 10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** ① 연맹에는 이사장 1명, 부이사장 3명, 이사 12명, 감사 3명을 둔다.

② 임원의 선출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되, 이사장은 부이사장 1명, 이사 3명을 러닝메이트로 한다.

**제 11 조 (임원의 임기 및 자격)**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감사는 현 집행부의 후반기 임기와 차기 집행부 전반부 임기가 겹치도록 한다.

② 임원의 결원이 발생시에는 임시총회 또는 다음 총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③ 임기 완료 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전임자가 계속 직무한다.

④ 임원은 계속해서 3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, 연맹 또는 본부 임원을 2년 이상 역임한자 중에서

선출한다. 다만 이사장 임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인 부이사장과 이사는 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

**제 12 조 (임원의 보수제한)**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 13 조 (임원의 해임)**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또는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해임한다.

**제 14 조 (임원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.

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맹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④ 임원은 임기 중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
**제 15 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** ① 이사장이 유고 및 궐위 시에는 부이사장 중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부이사장 중에서도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 16 조 (보궐선거)** 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② 부이사장, 이사 및 감사의 보궐선거도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.

**제 17 조 (감사)** ① 감사의 직무

1. 감사는 연맹의 예산, 결산, 경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2.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② 겸임 금지

감사는 이사 또는 지역본부(지부 포함)의 운영에 직접 관계되는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.

③ 감사는 제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

④ 감사에 종사한 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업무상의

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## 제 6 장 사무총국

**제 18 조 (사무총국)** ① 연맹에는 연맹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.

② 사무총국의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.

**제 19 조**            **삭 제** (2008. 6. 14.)

**제 20 조**            **삭 제** (2008. 6. 14.)

**제 21 조**            **삭 제** (2008. 6. 14.)

**제 22 조**            **삭 제** (2008. 6. 14.)

## 제 7 장 총 회

**제 23 조 (총회)** ① 연맹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,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, 그 선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대의원 선출규정에 의한다.

**제 24 조 (총회의 기능)** 총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·의결한다.

1. 정관 개정 : 총회 개최 90일전에 각 지역본부로부터 정관 개정(안)을 접수, 정관개정위원이 검토 후 이사회 심의를 거친 동 개정(안)을 상정하여 재적대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2. 사업 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이 임면 할 임원을 제외한 제10조 제1항의 임원선출.
4. 기타 이사회가 중요하다고 심의하여 상정한 사항

**제 25 조 (총회의 소집)** ① 정기총회는 매년 4월 넷째 주 일요일에 개최하며,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②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또는 재적대의원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고 서명 날인하여 요구하였을 때 10일 이전에 공고한 후 소집한다.

**제 26 조 (총회의 의장)** ①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장 유고 시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직무 대행자가 의장이 된다.

**제 27 조 (총회의 의결과 회의록)**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

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②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.

③ 회의록은 의장과 각 본부 출석 대의원 5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.

## 제 8 장 이 사 회

**제 28 조 (이사회 의 구성)**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.

**제 29 조 (이사회 의 기능)**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.

1. 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4. 정관 및 제규정과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5. 제규정 및 규칙을 개폐제정하는 사항
6. 기타 중요한 사항

**제 30 조 (이사회 의 소집)**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 31 조 (이사회 의 의장)**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장 유고 시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직무 대행자가 의장이 된다.

**제 32 조 (이사회 의 의결과 회의록)**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② 이사회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.

③ 이사회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전자 서명하여야 한다.

## 제 9 장 재 정

**제 33 조 (수 입)** ① 연맹의 수입은 회원의 제회비, 찬조

금, 기부금, 연맹 사업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연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.

**제 34 조 (예산 및 결산)** 연맹의 예산안 및 결산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 이 정관에 따른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.

③ 연맹이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,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.

**제 35 조 (회계연도)** 연맹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## 부 칙

**제 1 조 (준 칙)** 이 정관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, 제29조 제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 2 조 (효 력)** ① 이 정관의 제·개정은 민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,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② (이 규정의 효력의 불소급) 2004년 4월 25일 제19조 제①항의 개정은,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**제 3 조 (개 정)** ① 1958년 6월 22일 제3차 정기총회에서 제14조, 제26조, 제30조, 제38조 개정

② 1960년 4월 17일 제 5차 정기총회에서 제5조, 제6조, 제11조, 제36조 개정

③ 1961년 4월 9일 제6차 정기총회에서 개정

④ 1962년 4월 22일 제7차 정기총회에서 개정

⑤ 1966년 5월 7일 제11차 정기총회에서 제16조, 제38조, 제42조 개정

⑥ 1968년 5월 12일 제13차 정기총회에서 제33조, 제42조 개정

⑦ 1970년 5월 30일 제15차 정기총회에서 제16조 개정

⑧ 1971년 6월 13일 제16차 정기총회에서 개정

⑨ 1974년 4월 20일 제19차 정기총회에서 제8조 개정

⑩ 1975년 4월 20일 제20차 정기총회에서 개정

⑪ 1980년 4월 20일 제25차 정기총회에서 개정

⑫ 1982년 4월 18일 제27차 정기총회에서 제15조, 제38

조 개정

- ⑬ 1983년 4월 17일 제28차 정기총회에서 제13조, 제24조, 제30조, 제31조 개정
- ⑭ 1987년 4월 19일 제32차 정기총회에서 제13조 개정
- ⑮ 1989년 4월 23일 제34차 정기총회에서 제16조 개정
- 1992년 4월 19일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제10조, 제21조 개정
- 1993년 4월 18일 제38차 정기총회에서 제11조 개정
- 1994년 8월 28일 임시총회에서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9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7조, 제20조, 제21조, 제31조, 제34조, 제39조, 제40조 개정
- 1996년 4월 21일 제41차 정기총회에서 위임 받아 1996년 9월 4일 정관개정소위원회에서 전항 개정
- 1997년 9월 28일 임시총회에서 제3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6조, 제17조, 제19조, 제22조, 제24조, 제29조 개정

**제 4 조 (개 정)** ① 1997년 9월 28일 개정된 제14조 제4항은 1998년 해당 본부 총회 이후 시행한다.

- ② 2000년 4월 23일 제45차 정기총회에서 제2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24조, 제25조, 제27조, 제28조, 제29조 개정
- ③ 2001년 4월 22일 제46차 정기총회에서 제14조, 제28조 개정.
- ④ 2002년 4월 21일 제47차 정기총회에서 제5조, 제7조, 제10조, 제11조, 제14조, 제17조, 제25조, 제27조, 제30조, 제32조, 제38조 개정.
- ⑤ 2004년 4월 25일 제10조(제①항, 제②항), 제19조(제①항, 제④항) 제27조(제②항, 제③항)을 개정하고 총회에서 위임받은 부칙에 관한 사항을 2004년 5월 22일 이사회에서 제36, 37, 38조를 부칙 1, 2, 3조로 아래와 같이 개정하다.

- 연맹 제 규정의 제정 형식인 ‘~~조항~~’을, 본칙 및 부칙의 내용상의 변경 없이 ‘~~조항~~’으로 제 규정 전문의 형식을 수정하고, 문맥상 오자 및 탈자의 수정 및 규정의 명칭에 기재된 ‘편’을 삭제하며, 각 규정에 있어서 ‘제0장(제0조) 부칙’의 기재내용 중, ‘제0장(제0조)’을 삭제하고 ‘부칙’으로 개정한다.

- ⑥ 2007년 4월 22일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제2조, 제11조 제1항 개정
- ⑦ 2008년 6월 14일 서면 임시총회에서 제3조의 1추가, 제10조(제①항, 제②항), 11조(제④항), 제24조(제①항), 제29조(제④항)을 개정하고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 삭제

⑧ 제3조의 2에 의하여 최초 시행하는 지역본부는 지역본부구역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 지부를 지역본부로 둔다.

- ⑨ 2012년 4월 22일 제57차 정기총회에서 제9조 제①항, 제②항 개정, 제34조 제③항 신설.
- ⑩ 2014년 4월 27일 제59차 정기총회에서 제33조 제①항 개정 및 제②항 신설, 제34조 제③항 신설.
- ⑪ 2015년 4월 26일 제60차 정기총회에서 제9조 제①항, 제②항 및 제10조 제①항 개정.
- ⑫ 2015년 7월 2일 서면임시총회에서 기본재산 목록을 별지로 삼입 개정.
- ⑬ 2016년 3월 4일 서면임시총회에서 제34조 제②항 및 별지1 기본재산목록 개정.
- ⑭ 2017년 4월 23일 제62차 총회에서 제3조 및 별지1 개정.
- ⑮ 2017년 4월 23일 의결된 개정안은 주무부서의 승인을 얻은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(별지 1)

### 기본재산 목록

(2017. 2. 28. 현재)

구 분	소 재 지	규 모	평가가액	출연자	비 고
건물	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84 (마평동)	780,8㎡	589,955,655원		지상3층 지하1층
토지	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84 (마평동)	980㎡	1,240,583,579원		
합계			1,830,539,234원		